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09년 2월 4일

개정 2018년 8월 31일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수료 부과 원칙)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나.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라.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 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재산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동 지침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보수에 적용된다.

1.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수행과 관련된 운용보수
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수
3. 상기 1호 및 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수수료 부과 기준) 수수료 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및 비용
2.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3.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
4.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
5.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
6. 해당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7. 판매회사별 예상판매 규모 및 판매촉진 계획
8. 사모 간접투자기구 수익자 및 일임 고객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

제6조(수수료 결정 절차)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상품개발위원회(위원장: 마케팅본부 임원, 참석자: 운용, 운용지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마케팅, 세일즈 및 IT 부서 담당 팀장)에서 상품의 특성 및 업무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마케팅부서에서 결정하며 상품과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일임고객인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7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 절차)

1.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 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8조(공시) 동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